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2. 4 선고 2020가단12080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심 담당변호사 조민근

피 고 B

변론 종결 무변론

판결 선고 2021. 2. 4.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3. 체결된 증여계약을 19,599,29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599,2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사 김지선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의 지위

원고는 A이라는 상호로 D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2019. 9. 23. 소외 C과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 :이라 합니다)을 체결한 후 사업자금 명목의 일반대출을 실행하여 소외 C에게 대출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한 자입니다(갑 제1호증 여신거래 약정서).

2. 소외인 C의 지위

소외 C은 2019. 9. 23. 원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 받은 자로, 소외 C은 2020. 6. 15.부터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으며, 연체 2개월 전인 2020. 4. 3.에는 본인 명의의 충남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합니다)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증여하여 무자력에 빠진 바,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한 사람입니다(갑 제2호증 천안 서북구 E아파트 F호 등기부등본).

3. 피고의 지위

피고 B은 소외인 C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소외 C로부터 2020. 4. 3. 소외 C이 소유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 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증여받은 자입니다. 피고 B은 소외인 C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인 바, 소외 C의 이 사건 대출 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소외 C의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았으므로,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 B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합니다

II. 기초사실

원고와 소외 C은 2019. 9. 23.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소외 C에게 대출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소외 C은 대출약정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였으나, 2020. 6. 15.부터 상환할 원리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원고는 채무를 추심하고자 소외 C의 재산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외 C은 이미 2020. 4. 3. 본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 분의 1 지분을 배우자 또는 동거인인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본인의 적극재산이 36,885,148원(적극재산 79,063,110원 - 소극재산 42,067,962원)에서 -38,004,852원(적극재산 4,063,110원 - 소극재산 42,067,962원)으로 된 바, 무자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소외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지분 2분의 1을 증여받은 후, 소외 G조

합과 이 사건 아파트 전체를 담보로 제공하기를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바,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지분 2분의 1을 소외 C 명의로 반환 받는다 하여도 실질적인 채무자의 책임재산 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에 대하여 피고와 소외 C이 체결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가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Ⅲ.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요건 충족 여부

1.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성립요건

민법 제406조는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① 채무자의 사해행위, ② 채권자의 채권이 채무자의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할 것, ③ 채무자의 사해의사, ④ 수익자의

사해의사의 각 요건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2. 사안의 검토

가. 채무자의 사해행위

대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바(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라고 판시한바, 소외 C이 이 사건 증여를 통해 무자력에 빠졌거나 혹은 무자력 상태가 심화된 경우 소외 C의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원고가 조사한 소외 C의 자산변화내역을 살펴보면, 이 사건 증여 전의 소외 C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아파트 2분의 1 지분의 가치 75,000,000원(갑 제3호증 E아파트 실거래가 조회)과 장수군 H 대 501m² 가치 4,063,110원(갑 제4호증 H 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 H 공시지가 조회)을 합한 79,063,110원이고, 소극재산은 42,067,962원(소외 C의 소극재산은 원고가 자체적으로 확인한 내용으로 향후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으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 보다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적극재산이 75,000,000원만큼 감소한 바, <그림1>과 같이 이 사건 증여 이후의 소외 C의 적극재산은 4,063,110원, 소극재산은 42,067,962원으로 총 자산이 - 38,004,852원으로 이 사건 증여를 통해 소외 C은 무자력 상태에 빠

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1> 이 사건 증여 전후 소의 C의 자산내역

(1) 지분증여 전

구분		금액
적극 재산 (A)	전안부동산	75,000,000
	장수부동산	4,063,110
	합계	79,063,110
소극 재산 (B))	I 은행	1,945,000
	J	500,000
	K 캐피탈	2,769,000
	A	18,850,962
	-	-
	L 카드	9,834,000
	I 카드	1,800,000
	M 카드	600,000
	L 카드	800,000
	N	4,969,000
	합계	42,067,962
A -B		36,995,148

(2) 지분증여시점

구분		금액
적극 재산 (A)	전안부동산	75,000,000
	장수부동산	4,063,110
	합계	79,063,110
소극 재산 (B))	I 은행	1,945,000
	J 생명	500,000
	K 캐피탈	2,769,000
	A	18,850,962
	-	-
	L 카드	9,834,000
	I 카드	1,800,000
	M 카드	600,000
	L 카드	800,000
	N	4,969,000
	합계	42,067,962
A -B		- 38,004,852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소의 C은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에 빠진바, 소의 C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나.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할 것

원고의 소의 C에 대한 대출채권은 대출을 실행한 2019. 9. 23.에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다만 그 상환방법에 있어서 채무자가 원리금을 균등 분할하여 매월 원고에 상환하기로 약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의 C이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F(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합니다)에 대한 자신의 지분 1/2을 수익자인 피고 B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합니다)한 2020.4. 3. 에는 이미 원고의 소의 C에 대한 채권이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는 바, 원고의 소의 C에 대한 채권은 사해행위보다 앞서 성립된 채권으로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다. 채무자의 사해의사

대법원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판결).”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소의 C은 무상으로 자신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 지분 1/2을 수익자인 피고 B에게 증여한 바, 판례에서 언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해 요건은 충족되었습니다.

라. 수익자의 사해의사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에 있어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증명된 이상 수익자의 악의는 일용 추정을 받으며, 이에 대한 반증의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2022 판결).” 고 판시한바 수익자 피고 B의 사해의사는 추

정됩니다. 따라서 당해 요건은 충족되었습니다.

마. 소 결

따라서 본 사건의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각 요건을 모두 갖춘 적법한 청구에 해당합니다.

IV.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방법

대법원은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판결 참조)”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수익자인 피고는 2020. 4. 3. 소외 C로부터 사건 아파트의 2분의 1 지분을 증여받았으며, 그 이후인 2020. 4. 8. 근저당권자 G조합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천안 서북구 E아파트 F호 등기부등본),

만약 원고가 피고를 대상으로 본 소송에서 승소하여 이 사건 증여를 취소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반환 받는다 하더라도 소외 G조합의 G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반환되는 바, 채무자의 책임재산 회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원물반환에 갈음하는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IV.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취소 범위

대법원은 취소의 범위에 관하여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므로(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원고는 사해행위 이후 원심변론종결일까지 위 확정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 참조).”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정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정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고, 증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물반

환에 갈음하여 그 목적물 가액의 배상을 명함에 있어서는 수익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액과 취득세액을 공제하여 가액배상액을 산정할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판결 참조).” 라고도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의할 때 원고가 제시한 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취소범위는 소외 C의 사해행위를 한 2020. 4. 3. 당시의 원고의 대여원금 18,063,863원 및 이에 대한 2020. 4. 3.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약정된 지연배상금을 연 17%로 계산된 금원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대여원금 18,063,863원과 2020. 4. 3.부터 2020. 10. 2. 까지의 지연배상금 1,535,428원($18,063,863 \times 8.5\%$, 원단위미만 절사)을 합한 19,599,291원의 범위에서 피고와 소외 C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할 것을 청구하는 바이며, 향후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청구를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V. 결 어

이상의 내용을 감안하시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별지]

목 록

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 아파트 []호

(1동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20층 아파트

1층	550.40m ²	2층	540.26m ²
3층	540.26m ²	4층	540.26m ²
5층	540.26m ²	6층	540.26m ²
7층	540.26m ²	8층	540.26m ²
9층	540.26m ²	10층	540.26m ²
11층	540.26m ²	12층	540.26m ²
13층	540.26m ²	14층	540.26m ²
15층	540.26m ²	16층	540.26m ²
17층	540.26m ²	18층	540.26m ²
19층	540.26m ²	20층	540.26m ²
지층	535.96m ²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 대 30643.7m²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4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84.58m²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30643.7분의 32.018. 끝.